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66호)	김한규의원	2024.07.08.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0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 제41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9.09.) 전체회의 에서 상정 및 소위원회부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623호)	민형배의원	2025.05.28.	-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7.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부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926호)	이건태의원	2025.09.11.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회부(2025.09.2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504호)	민형배의원	2025.10.10.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부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845호)	문금주의원	2025.10.31.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533호)	문진석의원	2025.11.2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회부(2025.11.25.)

- 가. 제429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5.12.1.)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29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2025.12.3.)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후단 및 제4항).

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9항 삭제 및 안 제112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제112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무기명투표의 전자장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1.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무기명투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제외한다)
2. 제86조제4항에 따른 무기명투표
3. 제106조의2제6항에 따른 무기명투표
4. 제1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무기명투표
5. 제130조제2항에 따른 무기명투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2.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u><단서 신설></u> ⑤ ~ ⑩ (생략)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생략)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u><신설></u>	<u>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u>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u><삭제></u> <u>제112조의2(무기명투표의 전자장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u> <u>1.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무기명투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제외한다)</u> <u>2. 제86조제4항에 따른 무기명투표</u> <u>3. 제106조의2제6항에 따른 무기명투표</u> <u>4. 제1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u>

현 행	개 정 안
	<u>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무기명투표</u> <u>5. 제130조제2항에 따른 무기명투표</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u> <u>2.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